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11. 24.(화)

“공사장 소음부터 밭 옆 가로등까지”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로 쉽게 푼다

- 국민이 읽기 쉬운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 발간
- 지난해(2025년) 해결한 환경분쟁 사건 중 20건을 선정하여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나”를 사례별로 정리
- 분쟁 상황별로 피해 인정기준,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정은해)는 지난해(2025년) 위원회가 해결한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20건을 골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 쓴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를 11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결정 사례를 모은 ‘환경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 왔으나, 결정문 중심으로 구성돼 국민이 읽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올해는 원문 사례집과 별도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고 배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국민판 사례집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사장 소음·진동, 발파, 일조 방해, 빛공해, 철도·도로 교통 소음, 먼지 등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사건 20건이 담겼으며, 피해가 인정된 사례뿐 아니라 기각·조정된 사례도 함께 실었다.

사례마다 2쪽으로 구성해, 앞쪽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는 분쟁 경위와 함께 청구액과 결정액을 한눈에 비교하고, 뒤쪽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됐나’에서는 인과관계 검토 기준과 실제 나타난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판단 이유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챙길 점을 정리했다.

차례는 사건 번호가 아닌 ‘우리 동네 공사장’, ‘농사짓는 땅’, ‘동물을 키운다면’, ‘집 앞 다리와 기찻길’, ‘먼지·물’ 등 상황별로 묶었다. ‘수인한도’ 같은 어려운 용어는 ‘서로 참아야 하는 한도’처럼 쉬운 말로 바꿨고, 배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음·진동·먼지·일조 수치는 따로 모아 정리했다.

다리 그늘 때문에 깻잎 수확이 줄어든 사례는 다리가 준공되고 5년이 지나 신청했지만, 시설이 계속 남아 있으면 해마다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배상이 인정됐으며, 밤새 켜진 가로등 불빛 때문에 들깨 수확이 줄어든 사례에서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청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찻길 바로 옆에 30여 년 살아온 주민의 사례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기준을 넘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지만, 철도가 먼저 놓였다는 점을 반영해 배상액의 일부를 경감했다. 지하철 공사 뒤 집 관정이 마른 사례에서는 배상 대신 시행사가 새 관정을 파 주도록 하는 조정안이 나왔다.

반면 하천 공사 뒤 난초가 시들었다며 6억 원을 청구한 사례는 공사 기간이 짧고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판매 기록 등이 부족해 기각됐다. 사례집은 이처럼 어떤 자료가 있어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했다.

사례집 마지막에는 분쟁조정 신청 절차, 중앙위원회와 시도 지방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누리집(www.ecc.mcee.go.kr)으로 바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 코드를 넣었다.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는 국회, 지방정부, 공공기관, 각급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 상담 및 신청은 위원회 대표전화(1555-4582) 및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포털(www.ehtis.or.kr/onestop)로 하면 된다.

정은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환경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비슷한 피해를 겪는 국민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경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 구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 표지.
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안내자료. 끝.

담당 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김현진	(044-201-7940)
		담당자	사무관	이경노	(044-201-7950)
			주무관	민강원	(044-201-79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 표지

2025 환경분쟁조정 사례집·국민판

대국민사례집 바로가기

우리 집 앞 공사장부터
밭 옆 가로등까지

생활 속 환경분쟁 이야기



지난 한 해 위원회가 해결한 분쟁 가운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20가지 이야기를
골라,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됐는지**
쉽게 풀었습니다.



원문 사례집 전체는
https://ecc.moe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붙임 2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안내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피해 구제 안내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 피해, 소송 없이도 국가가 함께 해결합니다



공사장 소음, 층간소음, 일조 방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를 조사하고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 대상 환경피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일조·조망 방해	악취·대기오염
인공조명 빛공해	수질·토양 오염	화학물질·석면 노출	지하수·하천 수위 변화

가축·농작물 피해, 영업 손실, 건물 균열 등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

01
저렴한 비용
청구액 500만 원 이하는 수수료 1~2만 원으로,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전문적인 조사
소음 측정과 전문가 검토로 피해와 원인의 인과관계를 위원회가 직접 조사합니다.

03
신속한 처리
2025년 처리 사건 기준 평균 6.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4
법적 효력
재정 결정 후 60일 이내 소송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5-4582**

신청 방법·피해구제 제도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